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1가단1338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엠

담당변호사 이광복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일, 윤석진, 조경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김규봉

변 론 종 결 2024. 4. 11.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D 사이에 2021. 5. 9.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에게 2021. 5. 9. 마친

건축주명의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174,500원, 원고 B에게 13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전742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D는 2021. 5. 9.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약정은 D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D에게 위 건축주명의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현장에는 원고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3개와 분전망, 원고 B 소유의 가설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21. 5.경 이를 손괴하거나 절취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회사에게 13,174,500원, 원고 B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청구이의의 소(2022가단2303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2.

13. ‘이 사건 지급명령의 권원인 공사대금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2024. 2.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그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손괴, 절취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위 손괴, 절취에 관하여 고소하였으나,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는 피고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2022. 1. 14.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

별지